

2017년 하반기 임직원 청렴·부패방지교육 실시

□ 교육 목적

- 청렴교육 의무화 및 「청탁금지법」 시행에 따라 「청탁금지법」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

부패방지 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(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,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교육 개요

- 일 시 : 2017. 10. 10.(화), 09:30~11:30
- 장 소 : 의료중재원 18층 강당
- 참 석 자 : 원장 포함 총 101명 참석
- 강의주제 : ‘사례 중심 청탁금지법 이해 및 청렴실천방안’
- 강 사 : 정현영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·청렴교육 전문강사

□ 교육 사진

